

#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8,256,180	9,247,685
일반회계	282,810,646	8,484,319
특별회계	25,445,534	763,366
기타특별회계	25,445,534	763,366
상수도특별회계	10,437,544	313,1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3,464	22,30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270,222	38,1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9,590	17,088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2,164,372	364,93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50,119	7,504
기반시설특별회계	10,223	307

제 2 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20,21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 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5. 재해대책 및 복구비